

1. 개정이유

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전기안전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0972호, 2025. 5. 27. 공포, 2025. 11. 28. 시행)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신고서식의 신고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(안 제24조의2제1항)
- 나.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(안 제24조의2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) ① 법 제21조의2

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종류·수량·정력용량·설치위치의 변경
2.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소유자의 변경
3.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변경

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전기자동차 충전시설 [] 설치 [] 변경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		
신고인	성명(대표자)		회사명 또는 상호				
	주소 (전화번호:)						
신고내용	설치현황		설치 주소				
			설치 사업장 명칭(상호) (전화번호:)				
			설치위치 및 수량 건물내(지하 포함): 개, 건물외: 개, 합계: 개				
	충전 시설 종류	완속	스탠드형 []	kW: 개,	kW: 개,	kW: 개	합계: 개
			벽부착형 []	kW: 개,	kW: 개,	kW: 개	합계: 개
			과금형 콘센트 []	kW: 개,	kW: 개		합계: 개
		급속	스탠드형 []	kW: 개,	kW: 개,	kW: 개	합계: 개
			벽부착형 []	kW: 개,	kW: 개,	kW: 개	합계: 개
			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운영·관리 []		회사명		충전시설 관리 수량: 개
	회사명				충전시설 관리 수량: 개		
회사명		충전시설 관리 수량: 개					
변경신고	변경사항	소유자 변경 [] 종류·수량·정격용량·설치위치 변경 [] 충전사업자 변경 []					
	변경내용						
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유의사항		
동일 사업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기준으로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		
작성방법		
1. 신고인란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소유자의 정보를 적고,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 회사명 또는 상호란은 공란으로 둡니다.		
2. 신고내용에는 설치신고(변경신고 포함) 시 설치 또는 운영 예정인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현황에 대해 적습니다.		
3. 완속충전시설(40kW 미만)란 및 급속충전시설(40kW 이상)란은 설치된 충전기의 형태(스탠드형, 벽부착형, 과금형콘센트)에 따른 정격출력별 설치수량을 적습니다.		
4.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·관리업체가 3곳 이상인 경우 충전시설 관리 수량을 기준으로 많은 순으로 3곳을 적습니다.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4조의2(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) ①</u> <u>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종류·수량·정격용량·설치위치의 변경</u> <u>2.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소유자의 변경</u> <u>3.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변경</u>